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의 안 번 호	312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25

2025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8.29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8.29

4.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1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시내버스 적자 심화에 따라 긴급하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조 9,394억원에서 1조 799억원이 증가한 52조 193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조 7,311억원에서 9,527억원이 증가한 37조 6,838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조 2,083억원에서 1,272억원이 증가한 14조 3,355억원임

1.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총 52조 1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99억원(2.1%) 증가하였음

❍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4,873억원과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따른 세외수입 1,096억원을 증액하였음

❍ 그 외 회계간 전입금 1,306억원 및 예수금 수입 3,5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2-1 〉 2025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일반·특별 회계)

(단위 : 억 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5년 기정예산	증 감	비 율
총 규 모	520,193	509,394	10,799	2.1
자 체 수 입	304,071	302,975	1,096	0.5
시 세	249,125	249,125	-	-
세 외 수 입	54,946	53,850	1,096	2.0
경상적 세외수입	38,798	38,798	-	-
임시적 세외수입	10,471	9,427	1,044	11.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58	4,758	-	-
지난연도수입	919	867	52	6.0
지 방 교 부 세	1,039	1,039	-	-
국 고 보 조 금 등	112,307	107,434	4,873	4.5
공 채 및 차 입 금	19,339	19,339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83,437	78,607	4,830	6.1
보 전 수 입 등	16,321	16,321	-	-
전 입 금	50,007	48,701	1,306	2.7
예 탁 및 예 수 금	17,109	13,585	3,524	26.0

2. 세출예산안

❑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9,236억원을 편성하여 정부추경에 대응하겠음

❍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8,988억원을 편성하였음

❍ 발달장애인 돌봄, 중증 모자 집중치료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13개 국고보조사업에 248억원을 투입하겠음

❑ 둘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1,375억원을 편성하였음

❍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발굴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375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 외 공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국비 감소 등으로 1,082억원을 감추경하여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1)]

❍ 의안번호 제3125호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5년 8월 29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조 9,393억원 대비 2.1%, 1조 798억원을 증액한 52조 192억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9,52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표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①=②+③	당초예산 ②	간주처리 ③	추경예산(안) ④	기정예산 증·감액 ⑤=④-①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⑤/①
총 계 규 모	50,939,359	48,114,455	1,227,426	52,019,259	1,079,899	2.1
일 반 회 계	36,731,113	34,418,927	1,139,960	37,683,811	952,697	2.6
특 별 회 계	14,208,246	13,695,527	87,466	14,335,448	127,202	0.9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5,487억 9,800만원), **기초연금 지급**(△574억 9,300만원)등이 포함된 **국고보조금등**을 4,872억 4,700만원 증액 조정요청하고,

- **내부거래** 3,558억 3,600만원을 증액 조정요청한 바,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3,500억원을 예수(융자)하고, ②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58억 3,600만원을 전입받는 것임

- 또한 시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된 **재산매각수입** 1,042억 1,200만원 등을 세외수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3-2A〉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총 계	36,731,113	952,697	37,683,811	
세 외 수 입	1,608,459	109,613	1,718,072	
임시적세외수입	702,795	104,411	807,206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104,212 ◦시유재산 위탁 예금 이자수입 198
지난연도 수입	33,443	5,201	38,645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5,2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표 3-2B〉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
총 계	36,731,113	952,697	37,683,811	
보 조 금	8,680,645	487,247	9,167,893	
국 고 보 조 금 등	8,680,645	487,247	9,167,893	◦국고보조금 486,3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 ◦기금 9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6,665	355,836	1,642,502	
내부거래	1,286,665	355,836	1,642,5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836 ◦예수금수입 350,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4조 2,082억 4,600만원)보다 0.9%, 1,272억 200만원 증액된 14조 3,354억 4,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당초(1조 8,102억 4,500만원)보다 △0.3%, △55억원 감액된 1조 8,047억 4,5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 서울시는 금번 임시회에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동 특별회계로의 예탁규모를 당초 계획(3,989억원)보다 △55억원 감액된 3,934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동 특별회계도 이와 연동하여 **예수금수입**을 당초(3,989억원)보다 △55억원 감액된 3,934억원으로 조정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초 세입예산 규모(1조 7,627억 6,300만원)보다 7.5%, 1,327억 200만원 증액된 1조 8,954억 6,500만원

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연동하여 **예수금수입**을 당초계획(6,060억원)보다 79억원 증액된 6,139억원으로 조정하고, **기타회계전입금**도 당초(5,279억 9,400만원)보다 1,248억 200만원 증액된 6,513억 2,600만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조정요청한 것임

〈표 3-3〉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특별회계	14,208,246	127,202	14,335,448
기타특별회계	14,208,246	127,202	14,335,44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10,245	△5,500	1,804,745
교통사업 특별회계	1,762,763	132,702	1,895,465

〈표 3-4〉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계	52,019,259	100.0	50,939,359	100.0	1,079,899	2.1
지방세수입	24,912,528	47.9	24,912,528	48.9	-	-
세외수입	5,494,580	10.6	5,384,967	10.6	109,613	2.0
경상적세외수입	3,879,774	7.5	3,879,774	7.6	-	-
임시적세외수입	1,047,056	2.0	942,645	1.9	104,411	11.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5,802	0.9	475,802	0.9	-	-
지난연도수입	91,945	0.2	86,743	0.2	5,201	6.0
지방교부세등	103,914	0.2	103,914	0.2	-	-
보조금	11,230,671	21.6	10,743,423	21.1	487,247	4.5
국고보조금등	11,230,671	21.6	10,743,423	21.1	487,247	4.5
시·도비보조금등	-	-	-	-	-	-
지방채	1,933,858	3.7	1,933.858	3.8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43,706	16.0	7,860,668	15.4	483,038	6.1
보전수입등	1,632,102	3.1	1,632,102	3.2	-	-
내부거래	6,711,604	12.9	6,228,565	12.2	483,038	7.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50조 9,393억 5,900만원)보다 2.1%, 1조 798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9,526억 9,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8,987억 9,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 1,248억 200만원 등 15개 세부사업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 **기초연금 지급**(△643억 4,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111억 8,200만원)등 38개 세부사업에 대해 감액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3개 기타특별회계의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1,272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당초(1조 8,102억 4,500만원)보다 △0.3%, △55억원 감액된 1조 8,047억 4,5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지원**(△47억 500만원) 등 3개 사업을 감액 조정요청하고,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초(1조 7,627억 6,300만원)보다 7.5%, 1,327억 200만원 증액된 1조 8,954억 6,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1,375억원) 등 4개 사업을 조정요청하였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편성규모 2조 705억 7,500만원에서 총 규모의 변동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24억원) 등 5개 사업을 증·감 조정요청하였음

〈표 3-5〉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52,019,259	100.0	50,939,359	100.0	1,079,899	2.1
일반공공행정	10,609,692	20.4	9,708,677	19.0	901,014	9.2
공공질서및안전	1,615,771	3.1	1,616,201	3.1	△430	△0.03
교 육	4,453,659	8.5	4,453,659	8.7	-	-
문화및관광	1,089,820	2.1	1,089,820	2.1	-	-
환 경	2,831,047	5.4	2,836,019	5.5	△4,972	△0.1
사회복지	18,977,845	36.4	19,039,791	37.3	△61,945	△0.3
보 건	760,129	1.4	761,478	1.4	△1,348	△0.1
농림해양수산	52,476	0.1	52,503	0.1	△26	△0.0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9,448	1.2	659,937	1.3	△489	△0.07
교통및물류	5,653,076	10.8	5,403,943	10.6	249,132	4.6
국토및지역개발	2,932,511	5.6	2,933,419	5.7	△908	△0.03
과학기술	6,565	0.01	6,565	0.01	-	-
예 비 비	132,968	0.2	132,916	0.2	51	0.04
기 타	2,244,244	4.3	2,244,424	4.4	△180	△0.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표 3-6〉 세출총괄표(조직별)[주1)]

(단위 : 백만원, %)

분야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52,019,259	100.0	50,939,359	100.0	1,079,899	2.1
여성가족실	3,339,233	6.4	3,331,403	6.5	7,830	0.2
미래청년기획관	105,435	0.2	105,565	0.2	△130	△0.1
기획조정실	1,311,940	2.5	1,309,488	2.5	2,451	0.1
경제실	708,225	1.3	708,557	1.3	△301	△0.04
복지실	11,408,752	21.9	11,478,236	22.5	△69,483	△0.6
교통실	3,640,980	7.0	3,384,486	6.6	256,493	7.5
기후환경본부	584,237	1.1	588,509	1.1	△4,272	△0.7
시민건강국	772,221	1.4	773,750	1.5	△1,528	△0.2
민생노동국	250,643	0.4	251,148	0.4	△505	△0.2
행정국	6,804,075	13.0	5,905,331	11.5	898,744	15.2
미래공간기획관	76,117	0.1	76,317	0.1	△200	△0.2
재난안전실	1,356,661	2.6	1,364,032	2.6	△7,371	△0.5
도시공간본부	46,784	0.09	47,492	0.09	△708	△1.4
도시기반시설본부	1,052,357	2.0	1,052,347	2.0	10	0.00
미래한강본부	130,768	0.2	131,468	0.2	△700	△0.5
자치경찰위원회	25,845	0.05	26,275	0.05	△4300	△1.6

주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6개 실·본부·국에 대해서만 작성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조직별, p.12~14

나. 추경예산안의 특징과 추가 논의 필요사안

❍ 관련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난 8월29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①「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국·시비 증액이나 시비 증액요청 15개 사업, ②국·시비 감액이나 시비 감액요청 43개 사업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3-7〉 추경안을 통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세부사업 수

(단위 : 개)

구분		합계	증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감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소계	'25년도 예산 신규편성[주1]	그 밖의 증액편성[주2]	
합계		65	19	2	17	46
정책사업[주3]에 대한 증감요청		58	15	2	13	43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26	2	-	2	24
국비 교부규모 변경으로 인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소계	32	13	2	11	19
	국고보조금등 변경[주4]	32	13	2	11	19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감요청		1	-	-	-	1
재무활동에 대한 증감요청		3	2	-	2	1
예비비에 대한 증감요청		3	2	-	2	1

※ 주1) 기정예산이 0인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을 통해 '25년도 예산이 신규편성 요청된 것임
주2) 기정예산이 존재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이 요청된 것임
주3)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주4)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511-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기금(511-03) 포함]의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5,487억원과 시비 분담분 3,5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회가 지난 7월 4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

활한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로 예산운영 방향을 통보하여 서울시도 세입·세출예산에 국·시비 분담분을 편성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임

- 그동안 서울시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을 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숙고한 바, 지난 '15년 6월, 감사원이 재난·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일이 없도록 처분요구(주의) 하고, 재난·재해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적립·사용하라는 감사결과까지 있었기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가 현행 관련법에 따른 예수·예탁을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하였고, 8월 21일에는 감사원의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안내함에 따라 서울시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①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하고, ③「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예수금수입으로 편성하여 ⓑ행정국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국비와 서울시분담분을 편성요청한 것임

❍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불가피한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도하였음에도 다음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분담분 3,500억원은 ①**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하고,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③**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행정국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국비와 서울시분담분을 편성하려는 것인 바,

■ 회계나 기금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한시적으로 융통하는 예수·예탁

은 회계간 융자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분기별 특정일까지 납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타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수·예탁할 경우에는 이자상환 의무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임

■ 따라서 ①**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3,500억원)을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융자받아 ③**일반회계**로 다시 융자해 주는 구조이기에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3,500억원에 대해 이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주는 ①**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도 3,500억원을 다른 기금으로 예탁한 이후 발생 가능한 부족재원을 시중은행을 통한 모집공채(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부담 또한 필수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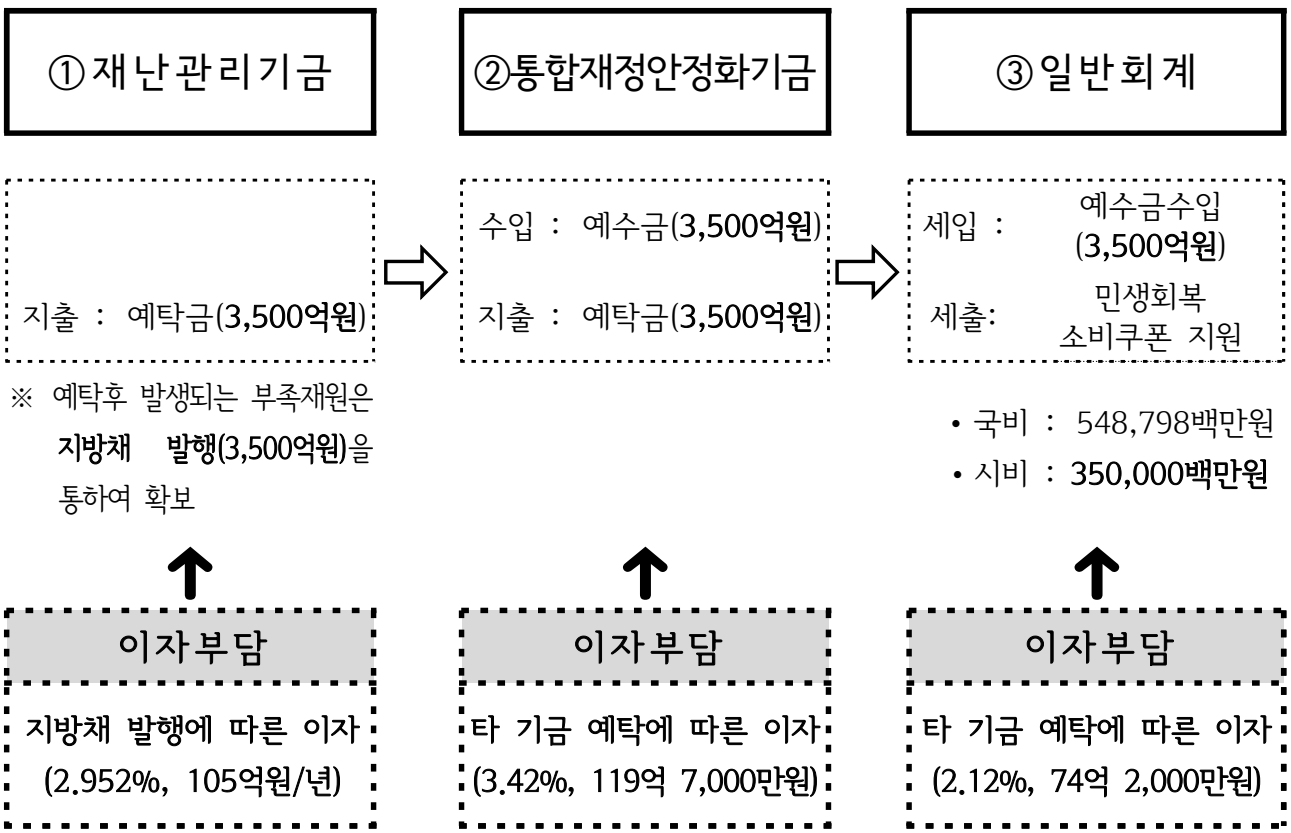

■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분담분 3,500억원을 확보하고자 ①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자해주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시 ③**일반회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융자의 릴레이' 구조가 부득이한 선택이라 하여도 재원이 기금과 회계를 거칠 때 마다 이자 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재정여건에 부합되는 편성사례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회 기간중 제출될 만큼 긴급한 의안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의회는 관련규칙에 따라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분담분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7월 4일, 국회가 정부추경예산을 의결하고, 정부가 7월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통해 국·시비 분담비율을 사실상 확정하여 서울시도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국을 중심으로 수 차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현황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분담분을 편성하는 "예수·예탁을 통한 재원 확보"라는 방법론을 제외하면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 되어야 하는 세출예산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 관련규칙에 명시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금번 제332회 임시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 수일이 경과된 지난 8월 29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임

■ 현행 관련법은 자치단체장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서울시로서는「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서울시분담분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준비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였다 할 것이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면 ①국비 증액이나 시비 대응편성이 필요한 사업, ②국비 감액이나 시비대응분 감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금번 제332회 임시회가 이미 시작된 이후 제출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의안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기중 제출한 것은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사의결권과 심사기간 등이 고려되기 보다는 예산편성권이 우선시된 결과로 사료됨

- 셋째,「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분담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회계간 융자(예수・예탁)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으로부터 3,500억원을 융자받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 바,

■ 현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로부터 의결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지방기금법」제11조제3항에는 '재난관리기금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의「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예시) A정책사업 10억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소요 발생으로 2억 증액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4. 7), p.284

■ 따라서 ①**재난관리기금**이 3,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융자)하고,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융자)하는 연쇄적 자금융통 과정에 있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시의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다음에서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것은[2]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13985, ('25. 9. 8), "2025년 제13차 재난관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3. 세입예산 관련 검토

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로 증액 편성요청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6,084억 5,900만원)보다 6.8%, 1,096억 1,300만원 증액된 1조 7,180억 7,2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7,027억 9,500만원)보다 14.9%, 1,044억 1,100만원 증액 요청되고,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예산(334억 4,300만원)보다 52억 100만원 증액 요청된 것임

-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경우, ①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부지 매매 계약금과 매각대금 잔금 471억 8,000만원, ②신풍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부지 718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기정예산(2,752억 7,800만원)보다 37.9%, 1,04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기타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1,301억원)보다 1억 9,800만원 증액 요청된 것으로 시유재산 위탁을 통한 예금이자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예산(334억 4,300만원)보다 15.6%, 52억 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난연도수입 중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5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8〉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세 외 수 입	1,608,459	109,613	1,718,072	
임시적세외수입	702,795	104,411	807,206	◦시유재산 매각수입 104,212 ◦시유재산 위탁예금 이자수입 198
지난연도수입금	33,443	5,202	38,645	◦매각 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5,2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등**(511)은 기정예산(8조 6,806억 4,500만원)보다 5.6%, 4,872억 4,700만원 증액된 9조 1,678억 9,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부 편성목인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8조 2,972억 400만원)보다 5.9%, 4,863억 7,900만원 증액된 8조 7,835억 8,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 등에 따라 세출예산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5,487억 9,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43억 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13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2억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하고,

■ **기초연금 지급**(△574억 9,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76억 2,40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25억 9,6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6억 2,500만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대해 감액 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에는 기정예산(738억 9,500만원)보다 △7,400만원 감액된 738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7,100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32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을 감액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은 10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3,095억 4,6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3,104억 9,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16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6억 4,500만원),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1억 200만원) 사업 등에 대한 증액 편성을 요청하고,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9억 7,6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3억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에 대한 감액 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3-9〉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8,680,645	487,248	9,167,893		
국고보조금	8,297,203	486,379	8,783,582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548,798
				ㅇ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02
				ㅇ 긴급복지지원사업	1,300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00
				ㅇ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550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80
				ㅇ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90
				ㅇ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57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형	29
				ㅇ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25
				ㅇ 한센병환자 관리지원(국비)	△6
				ㅇ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13
				ㅇ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13
				ㅇ 수소차 보급	△26
				ㅇ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51
				ㅇ 전기차 보급	△605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625
				ㅇ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596
				ㅇ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7,624
				ㅇ 기초연금 지급	△57,49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895	△75	73,820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71
				ㅇ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3
기금	309,546	944	310,490	ㅇ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	1,600
				ㅇ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	645
				ㅇ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102
				ㅇ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
				ㅇ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1
				ㅇ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0
				ㅇ 농지이용관리지원	△18
				ㅇ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95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300
				ㅇ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976

3)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제출된 추경안 중 **내부거래**는 3,55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경비가 전입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기정예산(2,456억 4,200만원)보다 2.4%, 58억 3,600만원 증액 편성요청되었고, ②「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분담분 3,500억원을 확보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수하여 예수금 3,50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0〉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내부거래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내 부 거 래	245,642	355,836	601,478	
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	245,642	5,836	251,478	◦누리과정 기타필요경비 지원 5,836
예 수 금	0	350,000	3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50,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구성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누리과정 기타필요경비 지원) 58억 3,600만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어,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 13,896명의 기타 필요경비(7만원)를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25년 9월중 서울시로 전출할 예정으로, 총 58억 3,632만원을 세입 예산안에 증액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500억원은 신규 편성요청된 것으로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을 위한 시비 분담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지난 8월14일, 행정안전부가 현행 관련법에 따른 예수·예탁을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하고, 8월21일에는 감사원의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안내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예수금 수입 3,50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세입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수(융자)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관련 의안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세입예산 중 편성 요청된 예수금 3,500억원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 반 회 계	36,731,113	952,698	37,683,811		
세 외 수 입	1,608,459	109,613	1,718,072		
임시적세외수입	702,795	104,411	807,206	◦시유재산 매각수입 ◦시유재산 위탁예금 이자수입	104,212 198
지난연도 수입	33,443	5,202	38,645	◦매각 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5,202
보 조 금	8,680,645	487,248	9,167,893		
국고보조금등	8,680,645	487,248	9,167,893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486,379 △75 9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6,665	355,837	1,642,502		
내 부 거 래	245,642	355,836	601,478	◦누리과정 기타필요경비 지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836 350,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타 기금으로부터 예수(융자) 받는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연동하여 세입예산 중 예수금수입을 기정예산(3,989억원)보다 △55억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며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추경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연동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타회계전입금을 1,248억 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예수금 수입도 79억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2〉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계		1,832,824	127,202	1,960,026		127,20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내부거래	690,466	△5,500	684,966	◦일반회계 전입금	△5,500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1,142,358	132,702	1,275,060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124,802 7,900

-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융자되는 예수금수입 79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되는 예수금수입 △55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나,

■ 지난 8월 29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중 동 특별회계로 융자하는 예탁금에 대한 지출계획을 변경 요청하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결과와 연동하여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3〉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내부거래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과목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수입	398,900	△5,500	393,4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5,500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526,524	124,802	651,326	일반회계 전입금	124,802
	예수금수입	606,000	7,900	613,9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7,900

4. 세출예산 관련 검토

가. 국비 증·감에 따른 추경 편성요청 사업

1) 국비 증액에 따른 추경 편성

❍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되어 증·감조정을 요청한 세부사업은 32개 사업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의 증액 통보 등에 따라 증액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행정국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3,500억원), 여성가족실 소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36억 8,100만원)을 포함한 13개 사업, 3,58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국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별설명서, p.205)은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분담분과 2차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자 기정예산(1조 1,230억 7,800만원)보다 8,987억 9,800만원(국비 5,487억 9,800만원, 시비 3,500억원)을 증액하여 총 2조 218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국비	시비	추경(안)
계	(x1,123,078) 1,123,078[주1)]	(x548,798) 898,798	548,798	350,000	(x1,671,876) 2,021,876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x1,118,181) 1,118,181	(x547,812) 896,612	547,812	348,800	(x1,665,993) 2,014,793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x4,896) 4,896	(x986) 2,186	986	1,200	(x5,882) 7,08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8), p.206

주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25. 8), p.21

□ 제4차 간주처리(7.15.)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조 1,230억 7,800만원

- 동 사업은 국비(75):시비(15):구비(10) 분담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원 분담비율(75:25)이 타 시·도 분담비율(90:10) 보다 15%p 높아 타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예수, 예탁)받아 서울시 분담분 3,5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서울시 분담분(3,50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수·예탁(융자)하는 재원으로, 금번 회기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 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시도별 현황

시 · 도	총 계	국 비	지 방 비	국: 시·도	광역:기초
합 계	13조 2,615억원	11조 6,009억원	1조 6,605억원	-	-
서울	2조 2,292억원	1조 6,719억원	5,573억원	75:25	6:4
부산	9,027억원	8,125억원	903억원	90:10	6:4
대구	6,538억원	5,884억원	654억원	90:10	5:5
인천	7,519억원	6,767억원	752억원	90:10	6:4
광주	3,895억원	3,505억원	389억원	90:10	5:5
대전	3,942억원	3,547억원	394억원	90:10	5:5
울산	2,967억원	2,670억원	297억원	90:10	8:2
세종	1,036억원	932억원	104억원	90:10	-
경기	3조 2799억원	2조 9,519억원	3,280억원	90:10	5:5
강원	4,247억원	3,823억원	425억원	90:10	5:5
충북	4,426억원	3,983억원	443억원	90:10	5:5
충남	5,955억원	5,359억원	595억원	90:10	5:5
전북	4,953억원	4,457억원	495억원	90:10	5:5
전남	5,089억원	4,580억원	509억원	90:10	5:5
경북	7,141억원	6,427억원	714억원	90:10	5:5
경남	8,961억원	8,065억원	896억원	90:10	5:5
제주	1,828억원	1,645억원	183억원	90:10	10:0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535('25. 8.27)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2차 교부 결정 통지" 재구성

- 여성가족실 소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별설명서, p.9)은 국비:시비:구비를 45 : 38.5 : 16.5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5년 7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3억 2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36억 8,100만원)를 매칭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시민건강국 소관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별설명서, p.148)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를 위해 최종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국비:시비 50:50)으로, 지난 '25년 7월, 국비 16억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16억원)를 매칭하고자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시민건강국 소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별설명서, p.139)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국비:시비 50:50)으로, 지난 '25년 7월, 국비 9,0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9,000만원)를 매칭하고자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6〉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살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국비	시비	
행 정 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x1,123,078) 1,123,078	(x548,798) 898,798	548,798	350,000	(x1,671,876) 2,021,876
여성가족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x304,019) 564,430	(x4,302) 7,984	4,302	3,681	(x308,322) 572,414
시민건강국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	(x-) -	(x1,600) 3,200	1,600	1,600	(x1,600) 3,200
복 지 실	발 달 장 애 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x13,551) 27,102	(x1,200) 2,400	1,200	1,200	(x14,751) 29,502
복 지 실	긴 급 복 지 지 원	(x27,774) 41,661	(x1,300) 1,950	1,300	650	(x29,074) 43,611
시민건강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 임 력 검 사)	(x1,693) 4,169	(x645) 1,397	645	752	(x2,338) 5,567
복 지 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x6,845) 13,690	(x550) 1,100	550	550	(x7,395) 14,790
복 지 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x3,485) 6,970	(x180) 361	180	180	(x3,665) 7,331
시민건강국	결핵 관리-보건소 결 핵 관 리 (국 비)	(x2,929) 4,999	(x102) 204	102	102	(x3,031) 5,203
시민건강국	장 애 인 의 료 기 관 이 용 편 의 지 원	(x-) -	(x90) 180	90	90	(x90) 180
복 지 실	최 중 증 통 합 돌 봄 운 영 지 원	(x73) 146	(x57) 114	57	57	(x130) 260
복 지 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x1,800) 4,500	(x25) 62	25	37	(x1,825) 4,562
복 지 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x2,073) 3,939	(x29) 55	29	26	(x2,103) 3,995

2) 국비 감액에 따른 추경 편성

❍ 추경안중 국비감액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은 복지실 소관 **기초연금 지급**(△68억 4,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35억 5,700만원)를 포함한 19개 사업, △152억 7,1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복지실 소관 **기초연금 지급**(사업별설명서, p.75)은 국비:시비:구비를 82.56 : 9.01 : 8.43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5년 7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74억 9,300만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68억 4,800만원)를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복지실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사업별설명서, p.49)는 국비:시비:구비를 60 : 28 : 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5년 6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76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시비(△35억 5,700만원)를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7A〉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살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국비	시비	
복 지 실	기 초 연 금 지 급	(x3,167,121) 3,512,754	(x△57,493) △64,341	△57,493	△6,848	(x3,109,628) 3,448,413
복 지 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 계 급 여	(x1,069,522) 1,574,622	(x△7,624) △11,182	△7,624	△3,557	(x1,061,898) 1,563,440
여성가족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x6,858) 22,862	(x△1,625) △4,389	△1,625	△2,763	(x5,232) 18,472
시민건강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x8,492) 12,777	(x△2,596) △3,894	△2,596	△1,298	(x5,896) 8,882

〈표 3-17B〉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국비	시비	
시민건강국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x16,363) 24,545	(x△976) △976	△976	-	(x15,386) 23,568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x67,735) 105,136	(x△605) △778	△605	△173	(x67,130) 104,357
시민건강국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x1,200) 2,400	(x△300) △600	△300	△300	(x900) 1,800
여성가족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x613) 876	(x△151) △216	△151	△64	(x462) 66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x3,181) 5,362	(x△95) △198	△95	△103	(x3,086) 5,164
경제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150) 320	(x△71) △151	△71	△80	(x78) 168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보급	(x6,508) 8,674	(x△26) △52	△26	△26	(x6,482) 8,622
여성가족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x69) 174	(x△13) △34	△13	△20	(x55) 139
시민건강국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x255) 511	(x△13) △27	△13	△13	(x242) 484
민생노동국	농지이용관리지원	(x61) 88	(x18) △26	△18	△7	(x43) 62
시민건강국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x452) 646	(x△10) △15	△10	△4	(x441) 631
시민건강국	한센병환자 관리지원(국비)	(x39) 78	(x△6) △12	△6	△6	(x33) 66
복지실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x9) 14	(x△3) △4	△3	△1	(x6) 9
시민건강국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x98) 147	(x△1) △1	△1	△0주1)	(x97) 145
시민건강국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x57) 82	(x△0) △0	△0주2)	△0주3)	(x56) 81

주1)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의 시비 조정액은 △652,000원임

주2)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의 국비 조정액은 △483,000원임

주3)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의 시비 조정액은 △207,000원임

나. 시비 증·감에 따른 추경 편성요청 사업

1) 시비 증액에 따른 추경 편성

❍ 금번 추경안중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은 6개 사업, 2,706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실 소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사업별설명서 p.98)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고자 기정예산(3,200억 1,000만원)보다 43.0%, 1,375억원 증액된 4,575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8〉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계	320,010	137,500	457,5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	10
운수업계보조금	320,000	137,500	457,5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8), p.98

- 서울시는 지난 2004년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4년도 최종예산(4,000억 1,000만원) 보다 △20.0%, △800억원이 감액된 3,2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당해연도 부족분(5,102억원) 중 62.7%를 충당한 상태로 검토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1,375억원)이 추가 편성(4,575억원)되어도 서울시가 산정한 당해년도 부족분(5,102억원)을 전부 해소하는데 한계

(△527억원)가 있고, ’25년도 연도말 누적부채도 본예산 편성 기준, 1조원 규모로 추계하고 있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누적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망)	’25년 (전망)
총 재정소요액 (C = A + B)	13,280	17,184	16,373	12,258	13,360
당해연도부족분(A)	7,489	8,465	7,303	4,800	5,102
전년누적부채(B)	5,791	8,719	9,070	7,458	8,258
재정지원예산액(D)	4,561	8,114	8,915	4,000	3,200
누적부채(E=C-D)	8,719	9,070	7,458	8,258	10,16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E-mail 협조

- 여성가족실 소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별설명서, p.13)은 5세 무상보육비 58억 3,600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액 외 5세 대상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에 대해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92,425	5,836	198,2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2,425	5,836	198,262	○ 5세 무상보육 지원 70,000원*13,896명*6개월 5,83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5. 8), p.14

- **누리과정 보육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요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여 ①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된 후, ②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서울시로 전입되는 재원이나,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요청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통해 지원되며 '25년 9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될 것으로 확인됨

-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어린이집은 7, 8월 보육료를 이미 납부한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환불처리하거나 이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린이집이 매월 입·퇴원 및 출결상황을 반영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지급,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동 사업 지원비의 부정사용 및 학부모부담금 수납한도액 인상에 대한 지도·감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통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1,248억 200만원),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24억원)은 회계간 혹은 기금간 내부거래 등 재원을 전출·전입하는 재무활동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도시개발)**(5,1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1,000만원)에 대한 조정도 추경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

〈표 3-21〉 시비 증액에 따른 증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교통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320,010	137,500	457,510
교통실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	140,499	124,802	265,301
여성가족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92,425	5,836	198,262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432,527	2,400	434,927
기획조정실	예비비(도시개발)	4,076	51	4,127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4	10	34

2) 시비 감액에 따른 추경 편성

❍ 금번 추경안에 감액요청된 46개 사업중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지원**(△47억 500만원)을 포함한 27개 세부사업은 시비를 감액요청(△216억 400만원)한 사업으로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사료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은 연말에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16억 1,600만원)의 △26.6%, △4억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원으로 조정요청한 것임

〈표 3-22〉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감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616	△430	1,186		
자산및물품취득비	1,616	△430	1,186	○ 무인단속장비 구매	△43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8), p.264

- 동 사업은 작년 12월,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① 매년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고, ② 장비 구매 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어 사업부서가 당초 편성·제출한 규모(17억 7,100만원)의 △8.7%, △1억 5,500만원을 감액한 16억 1,600만원으로 조정한 바,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본예산 심사시 동 사업의 편성규모를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16억 1,600만원으로 의결하였음

〈표 3-23〉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본예산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예 산 안 (A)	증 감 액 (A - B)	예 비 심 사 (B)	증 감 액 (B - C)	예결위심사 (C)
계	1,771	△155	1,616	-	1,616
자산및물품취득비	1,771	△155	1,616	-	1,616

- 사업부서는 예산심의 당시 무인단속장치의 종류와 성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예산 감액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제기한 바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가 개시되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장의 수요가 예산편성 시점의 예측치에 미달하고 집행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회계연도중 감액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 동 사례는 재원확보를 우선시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을 저해한 행위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본부 소관 **장안평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은 기정예산 2억 4,000만원 전액을 감액 요청한 것임

〈표 3-24〉 장안평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감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40	△240	-	
사 무 관 리 비	230	△230	-	○ 민간투자사업 관련 수수료 △23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	△10	-	○ 신문공고료 등 △1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8), p.106

- 당초 지난 '16년도에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서울시는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 사업성 저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고, 서울시도 실·국간 업무가 이관된 바, 금년도에도 관련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진행중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편성액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사례와 같이 사전절차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이후 절차와 관련된 소요예산을 연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경우라면 지난 5월에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교통실 소관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지원**(사업별설명서, p.94)은 언주~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운영부문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서는 계약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47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재난안전실 소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사업별 설명서, p.228)는 공정지연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25억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실 소관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사업별설명서, p.89)는 예산편성 당시 노후전동차 칸당 지원단가(12.8억원)에서 최종 계약단가(11.85억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8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5A〉 시비 감액에 따른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교통실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지원	38,157	△4,705	33,452
재난안전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	5,345	△2,500	2,845
재난안전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	6,750	△2,000	4,750
재난안전실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2,200	△1,600	600
기후환경본부	국고보조금 반환	5,183	△1,500	3,683
여성가족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927	△1,349	577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6,091	△1,101	4,990
재난안전실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3,295	△950	2,345
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x77,558) 153,363	△805	(x77,558) 152,558
도시공간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2,707	△708	1,999

〈표 3-25B〉 시비 감액에 따른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미래한강본부	자연형 호안 복원	5,560	△700	4,860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6,189	△600	25,589
시민건강국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1,200	△458	742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전환사업)	1,616	△430	1,186
민생노동국	청년 골목창업 지원	2,797	△339	2,458
교통실	예비비(교통관리계정)	424	△297	126
기후환경본부	장안평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	240	△240	-
미래공간기획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활용 타당성 조사	200	△200	-
시민건강국	기본경비	3,017	△180	2,837
재난안전실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261	△177	83
경제실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215	△150	3,065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852	△145	706
재난안전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2,900	△143	2,756
미래청년기획관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4,247	△130	4,117
민생노동국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1,577	△100	1,477
행정국	서울혁신파크 운영	60	△54	6
민생노동국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122	△40	82

5. 기타검토 의견

가.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법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는 관련기준을 통해 예산서 등 주요 서식과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 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정요청된 사업은 총 65개 사업으로, 그 중 국비 증·감 통보에 따라 시비를 증·감액하고자 조정요청된 사업은 32개 사업으로, 국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제출한 사업이 대다수임에도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국비의 감액교부 시기를 기재하지 않아 이른 바, '묻고 따지지 않는 감액 요청'을 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을, 적기에 증·감 조정하여 제출한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정보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실**의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사업별설명서 p.53)의 경우, 국비 증액 변경에 따른 시비예산 증액편성이라고 하나,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보급**(사업별설명서 p.108)의 경우, 분담 비율과 감액 변경 내시일을 기재하지 않아 국비가 내시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민건강국** 소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사업별설명서 p.136)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사업별설명서 p.145), **지역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국비)**(사업별설명서 p.151),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인 지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국비)(사업별설명서 p.155) 그리고 **민생노동국** 소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별설명서 p.199)의 경우, 변경내시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별설명서 p.155)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별설명서 p.167),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사업별설명서 p.159)은 국·시비 분담 비율과 감액 예산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관련 설명이 없어 적정 예산을 감액 요청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감액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도 실제로 시의회가 감액을 의결하여야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통보" 하였으니 감액을 승인하라는 일종의 "하명" 형식의 사업별 설명서 작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조재원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증·감 변경에 따른 시비 분담분 조정이라고 할지라도 ①관련 부처, ②국비 감액 변경 사유와 내시일, ③시비 분담 비율과 정확한 소요액, ④소요 재원의 구성과 변동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여성가족실** 소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사업별설명서 p.25)의 경우, 국비 감액에 따라 시비도 감액 조정 요청하는 사업이나 기정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없는 예산과목(사무관리비)까지 감액을 요청한 바,

〈표 3-26〉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출내역
계	(x69) 174	(x△13) △34	(x55) 139	
사 무 관 리 비	(x-) -	(x△13) △34	(x△13) △34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11.6명×250천원×4주×3개월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x69) 174	(x-) -	(x69) 17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5. 8), p.25

■ 회계연도중 보건복지부가 집행지침을 변경하여 아동복지센터 등 긴급보호 인프라를 직영하는 시·도의 경우, 시·도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25년 3월, 서울시는 예산과목을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 전용된 예산(**사무관리비**)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변경이나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이 불가하여 회계연도중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에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국비 감액 내시를 근거로 회계질서와 무관하게 예산현액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 회계질서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례임에도 추경안에 포함될 수 없는 사업까지 여과하지 않고 제출한 사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발의

○ 일　　시 : 2025. 9.11(목) (제1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서상열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Ⅶ. 부대의결

○ 간담회에서 김종길 위원이 제안하고, 기획조정실장이 답한 것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주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사용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는 용역을 서울시가 추진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개선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2025. 9.1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25

2025년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Ⅰ. 수정이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과목과 사업내역에 대해 수정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 부 : 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내역 1부. 끝.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수 정 안

2025. 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1. 예산총칙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52,019,259,132	1,100,000,000
일 반 회 계	37,683,811,046	1,000,000,000
특 별 회 계	14,335,448,086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2,241,506,823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1,116,189,533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5,317,29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2,093,941,263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04,745,733	
(4) 교통사업특별회계	1,895,465,965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926,946	
(6) 주택사업특별회계	2,994,688,622	
(7) 도시개발특별회계	2,070,575,080	
(8) 균형발전특별회계	192,553,292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274,565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2,159,600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375,590	
(12) 소방특별회계	1,001,175,870	

제2조 ~ 6조(생략)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250,99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08,250,990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 이 하 생 략 –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52,019,259,132	1,100,000,000
일 반 회 계	37,683,811,046	1,000,000,000
특 별 회 계	14,335,448,086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2,241,506,823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1,116,189,533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5,317,29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2,093,941,263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804,745,733	
(4) 교통사업특별회계	1,895,465,965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926,946	
(6) 주택사업특별회계	2,994,688,622	
(7) 도시개발특별회계	2,070,575,080	
(8) 균형발전특별회계	192,553,292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274,565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2,159,600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375,590	
(12) 소방특별회계	1,001,175,870	

제2조 ~ 6조(생략)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250,99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08,250,990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 이 하 생 략 –

2. 세입·세출 총괄 수정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52,019,259,132**	-	-	-	**52,019,259,132**
일 반 회 계	**37,683,811,046**	-	-	-	**37,683,811,046**
특 별 회 계	**14,335,448,086**	-	-	-	**14,335,448,086**
공기업특별회계	**2,241,506,823**	-	-	-	**2,241,506,823**
수도사업특별회계	1,116,189,533	-	-	-	1,116,189,533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25,317,290	-	-	-	1,125,317,290
기타특별회계	**12,093,941,263**	-	-	-	**12,093,941,26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04,745,733	-	-	-	1,804,745,733
교통사업특별회계	1,895,465,965	-	-	-	1,895,465,965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1,926,946	-	-	-	81,926,946
주택사업특별회계	2,994,688,622	-	-	-	2,994,688,622
도시개발특별회계	2,070,575,080	-	-	-	2,070,575,080
균형발전특별회계	192,553,292	-	-	-	192,553,29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274,565	-	-	-	21,274,56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2,159,600	-	-	-	2,002,159,600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9,375,590	-	-	-	29,375,590
소방특별회계	1,001,175,870	-	-	-	1,001,175,870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52,019,259,132**	-	-	-	**52,019,259,132**
일 반 회 계	**37,683,811,046**	-	-	-	**37,683,811,046**
특 별 회 계	**14,335,448,086**	-	-	-	**14,335,448,086**
공기업특별회계	**2,241,506,823**	-	-	-	**2,241,506,823**
수도사업특별회계	1,116,189,533	-	-	-	1,116,189,533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25,317,290	-	-	-	1,125,317,290
기타특별회계	**12,093,941,263**	-	-	-	**12,093,941,26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804,745,733	-	-	-	1,804,745,733
교통사업특별회계	1,895,465,965	-	-	-	1,895,465,965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81,926,946	-	-	-	81,926,946
주택사업특별회계	2,994,688,622	-	-	-	2,994,688,622
도시개발특별회계	2,070,575,080	-	-	-	2,070,575,080
균형발전특별회계	192,553,292	-	-	-	192,553,29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274,565	-	-	-	21,274,56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2,159,600	-	-	-	2,002,159,600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9,375,590	-	-	-	29,375,590
소방특별회계	1,001,175,870	-	-	-	1,001,175,870

3. 세부 수정내역

세 출 예 산

□ 여성가족실

(단위 : 천원)

과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여 성 가 족 실			(×1,232,794,916) 3,339,233,628	(×1,232,794,916) 3,339,233,628	-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288,749,539) 659,872,275	(×288,749,539) 659,872,275	-	
	(일반회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5,714,395) 15,350,644	(×5,714,395) 15,350,644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55,680) 139,200	(×55,680) 139,200	-	※ 통계목 오기 정정 (100-201-01) 사무관리비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13,920)△34,800 → (100-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13,920)△34,800

□ 미래청년기획관

(단위 : 천원)

과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미 래 청 년 기 획 관			(x250,000) 105,435,104	(x250,000) 105,435,104	-	
(청년사업담당관) 청년 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90,048,573	90,048,573	-	
	(일반회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90,048,573	90,048,573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4,117,089	4,117,089	-	※ 내역사업 오기 정정 (100-307-08) 이차보전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30,000 →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130,000